임용 결격사유

(임용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, 공금횡령 · 유용 및 금품·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
9.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,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(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)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
전형단계별 가산특전

☐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기준 :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% 또는 5%

구분	10% 가산	5% 가산
독립 유공자	• 애국지사 본인 • 순국선열 유족 •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	• 애국지사 가족 •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•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
국가 유공자	• 국가유공자 본인 •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 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	• 국가유공자의 가족 •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• 사망한 국가 유공자의 제매 중 1인 • 전몰·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
5.18 민주 유공자	•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• 기타 5·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• 5·18 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	•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·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• 5·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·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• 사망한 5·18 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
특수임무 수행자	•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 본인 •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	•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•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•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
고엽제 휴유의증	•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	•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
보훈보상 대상자	•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•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	•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

☐ 장애인 : 전형 단계별 만점의 3% (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불가)

가점	항목
3%가산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

직무별 전문자격

☐ 직무별 전문 자격

점수	자격증 구분
50점	기술사
48점	철도장비운전자격
44점	기능장, 기사
38점	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
32점	기능사
26점	컴퓨터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
20점	자격증 없음

※ 상기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

※ 자격, 면허, 등록 및 제한사항은「공고일 전일부터」 계속하여 취득·유효한 것에 한함.

☐ 직무별 자격종목

주요직무	지원분야	자격종목
고객시설안전	기계·건축 역무·운전취급	철도장비운전자격(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,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), 철도신호, 컴퓨터활용능력 1-2급,가스, 건설기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건설안전, 건설재료시험, 건축,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목공, 건축목재시공, 건축설비, 건축시공, 건축일반시공, 도장, 건축전기설비, 건축품질시험, 공조냉동기계, 금속재료, 기계, 기계가공, 기계가공조립, 기계설계, 기계안전, 기계정비, 대기관리, 대기환경, 도시계획, 메카트로닉스, 배관, 상하수도, 설비보전, 소방, 소방설비(기계), 소방시설(전기), 수자원개발, 수질관리, 수질환경, 승강기, 실내건축, 에너지관리, 용접, 일반기계

기술안전	**전기·통신·신호**	무선설비, 방송통신, 산업안전, 전기, 전기공사, 전기안전, 전기응용, 전기철도, 전자, 전자계산기, 전자계산기제어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전자기기, 전자부품장착, 전자응용, 전파전자통신, 정보관리, 정보처리, 정보통신, 철도, 철도신호, 컴퓨터시스템응용, 컴퓨터응용가공, 통신선로, 통신설비, 판금제관, 폐기물처리, 화공, 전자, 전파
	철도토목·특수차	궤도장비정비, 철도운송, 철도차량, 철도차량정비, 철도토목, 초음파비파괴검사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치공구설계, 침투비파괴검사, 콘크리트, 토목, 토목구조, 토목시공, 토목품질시험, 토질 및 기초, 철도장비운전자격(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,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,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, 디젤차량운전면허, 철도장비 운전면허)

철도장비 운전 자격요건

주요직무/지원분야	자격요건
기술안전 **(철도토목 · 특수차)**	·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·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·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· 디젤차량 운전면허 · 철도장비 운전면허
고객시설안전	·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·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

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

(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등 적용)

1. 일반결함
   가.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
   나.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
   다. 난치성 사상충병(絲狀蟲病)
   라. 중증인 고혈압증(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)
   마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

2. 비강(鼻腔)·구강·인후기관 계통
   가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·구강·인후·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
   나.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

3. 치아 계통
   가. 아래턱관절 강직(强直), 저작근(咀嚼筋)의 질환 또는 악골(顎骨)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
   나.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
   다.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

4. 흉부
   가.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
  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
   다.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, 중증 만성기관지염, 중증 기관지확장증, 중증 폐기종,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

5. 심장·혈관 및 순환기 계통(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   가. 심부전증(心不全症)
   나. 발작성 빈맥(150회/분 이상) 또는 기질성 부정맥
   다. 방실전도장애(房室傳導障碍)
   라. 동맥류
   마. 유착성 심낭염
   바. 관상동맥질환
   사. 폐성심(肺性心)

6.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
   가.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(脾機能亢進症)
  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

7. 생식비뇨기 계통
   가. 중증 요실금
   나. 진행성 신기능(腎機能)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(腎疾患)
   다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(腎結核) 또는 생식기결핵
   라.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(腎症候群)

8. 내분비 계통
   가.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
  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
   다.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(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)
   라.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
   마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

9. 혈액 또는 조혈 계통(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   가.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
   나. 혈소판 감소 자색반(紫色斑)
   다. 재생불량성 빈혈
   라. 용혈성 빈혈(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)
   마. 진성 적혈구증가증
   바. 백혈병

10. 신경 계통
   가. 뇌졸중(腦卒中)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   나.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   다. 만성 진행성·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(腦脊髓炎)[유전성 무도병(舞蹈病), 근위축성 측색경화증, 소뇌성운동실조증(小腦性運動失調症),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]
   라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

1) 뇌종양 및 척수종양
2) 외상성 신경질환
3) 말초신경질환
4) 전신성의 신경근(神經筋) 접합부 질환
5)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
6) 뇌전증(腦電症)

11. 사지(四肢)
가. 보조 장구(裝具)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
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·관절 질환자

12. 귀
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

13. 눈
가.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.2 이하인 경우
나. 두 눈의 시야협착(視野狹窄)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
다.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·활동성·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
라. 중심 시야 20° 이내의 복시(複視)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(眼球振盪)
마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

14. 정신 계통
가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
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
다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
라.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